대전광역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 573 제출연월일 : 2009. 11 . 2 .

제 출 자:대전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「건축법」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인용조문을 정비함(안 제21조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및 「건축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합 의:해당없음

라. 기 타

(1) 신 · 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(2) 규제심사 :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

(2) 입법예고 : 해당없음

대전광역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대전광역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1항 및 제3항 중 "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"을 각각 "예산" 으로 한다.

제21조제3항 단서 중 "「건축법」제32조"를 "「건축법」제42조"로 한다. 제28조제2항 중 "규칙으로"를 "시장이 따로"로 한다.

제33조 중 "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시장"을 "시장"으로 한다. 제34조를 삭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1조(도시녹화사업) ①시장은 도시녹화사업을 위한 녹지조성 및 보전에 따른 조경시설의 설치비용 등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 ② (생략) ③시장은 개인 또는 공공건축물의 소유주가 옥상녹화·창문화단녹화·벽면녹화·담장개방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의 활성화를 위하여 녹지관리청을통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범위안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「주택법」제21조와 「건축법」제32조 등 건축 인·허가와 관련한 법적 의무 조경의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한다.	
제28조(우수조경시상) ① (생략) ②시상의 종류, 선정절차 및 시상방법 등 은 <u>규칙으로</u> 정한다.	제28조(우수조경시상) ① (현행과 같음) ②
제33조(보고) 녹지관리청은 조경시설 조성 및 관리실적을 <u>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</u> <u>따라 시장</u>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	,
제34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	<삭제>

관계법령

건축법

제42조(대지의 조경) ①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, 옥상 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.

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식재(식재) 기준,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, 옥상 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

대전광역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09. 12.18 교육사회위원회

I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9. 11. 2 대전광역시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09. 11. 3

다. 상 정 일 자 : 제185회 제2차 정례회

제8차 교육사회위원회(2009.12.18)

상정, 질의, 심사, 원안가결

II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환경녹지국장 윤태희)

1. 제안이유

「건축법」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인용조문을 정비함 (안 제21조).

Ⅲ. 검토의견 (전문위원 권태환)

○ 본 조례안은 도시녹화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상위 법률의 개정된 조문에 맞게 정비하고, 필요 없는 조항 및 문구를 삭제 하여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.

IV. **질의 · 답변 요지** : 생 략

V. **심 사 결 과** : 원안가결

Ⅵ. **기타 필요한 사항**: 없 음